

1998년도 제3회 증정북도추가경정예산(안)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전 문 위 원

1. '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 편성방향 및 규모

가. 예산(안) 편성중점방향

-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 정리
- 이월대상사업(명시 및 계속비) 조정확정

□ 편 성 기 준

< 세 입 예 산 >

- 세 외 수 입
 - 추가징수 및 징수예상수입 예산계상
 - 여건변동에 따른 타기관의 전입금 및 부담금 조정
- 중앙지원금
 - 추가 및 변경내시분 중앙지원금 최종조정 계상
(지방교부세, 지방양여금, 국고보조금, 중앙기금등)

< 세 출 예 산 >

- 중앙지원사업
 - 추가 및 변경내시분 중앙지원금 및 도비부담금 조정계상
- 이월사업
 - 명시이월 및 계속비대상사업비 조정 확정

나. 예산(안)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액		기정예산액		증 감	
	금액	%	금액	%	금액	%
합 계	1,190,304,349	100.0	1,146,981,392	100.0	43,322,957	3.8
○ 일반회계	945,438,984	79.4	902,749,834	78.7	42,689,150	4.7
○ 특별회계	244,865,365	20.6	244,231,558	21.3	633,807	0.3
-공기업특별회계	200,049,849	16.8	199,561,323	17.4	488,526	0.2
·공영개발	53,530,587	4.5	79,082,061	6.9	△25,551,474	△32.3
·지역개발기금	146,519,262	12.3	120,479,262	10.5	26,040,000	21.6
-기타특별회계	44,815,516	3.8	44,670,235	4.2	145,281	0.3
·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	1,984,304	0.2	1,984,304	0.2	-	-
·의료보호기금	30,780,837	2.6	30,635,556	2.6	145,281	0.5
·농어촌소득개발기금	8,926,291	0.7	8,926,291	0.8	-	-
·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	2,164,084	0.2	2,164,084	0.2	-	-
·증평출장소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	960,000	0.1	960,000	0.1	-	-

다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(안) 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	기 정 예 산 액		증 감	
	금 액	%	금 액	%	금 액	%
합 계	1,190,304,349	100.0	1,146,981,392	100.0	43,322,957	3.8
지 방 세	145,110,000	12.2	145,110,000	12.7	-	-
세 외 수 입	294,067,459	24.7	300,740,187	26.2	△6,672,728	△2.2
-경상적세외수입	43,798,940	3.7	43,798,940	3.8	-	-
-임시적세외수입	250,268,519	21.0	256,941,247	22.4	△6,672,728	△2.6
지 방 교 부 세	244,774,265	20.6	242,743,960	21.2	2,030,305	0.8
지 방 양 여 금	90,111,372	7.6	78,509,494	6.8	11,601,878	14.8
보 조 금	350,962,253	29.5	331,318,951	28.9	19,643,302	5.9
지 방 채	65,279,000	5.5	48,558,800	4.2	16,720,200	34.4

라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(안) 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	기 정 예 산 액		증 감	
	금 액	%	금 액	%	금 액	%
합 계	1,190,304,349	100.0	1,146,981,392	100.0	43,322,957	3.8
인 건 비	53,444,741	4.5	52,031,194	4.5	1,413,547	2.7
물 건 비	43,393,543	3.6	43,172,172	3.8	221,371	0.5
이 전 경 비	249,410,144	21.0	238,441,363	20.8	10,968,781	4.6
자 본 지 출	596,595,024	50.1	581,372,170	50.7	15,222,854	2.6
용자 및 출자	40,397,054	3.4	83,897,054	7.3	△43,500,000	△51.8
보 전 재 원	64,472,292	5.4	35,732,292	3.1	28,740,000	80.4
내 부 거 래	24,777,061	2.1	24,570,638	2.1	206,423	0.8
예비비 및 기타	117,814,490	9.9	87,764,509	7.7	30,049,981	34.2

2. 예산(안) 내역

□세입예산

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1,903억 434만 4천원으로, 그 중 일반회계가 79.4%로 9,454억 3,898만 4천원, 특별회계가 20.6%인 2,448억 6,536만 5천원임.

< 일반회계 >

-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,451억 1,000만원, 세외수입이 1,043억 7,139만 3천원이며,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, 지방양여금, 보조금등은 6,606억 7,859만 1천원이며, 지방채는 352억 7,900만원임.
-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.1%인 21억 9,338만 9천원이 감액된 1,043억 7,139만 3천원으로

<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>

- 공유재산매각수입은 3억 9,233만원이 증액된 139억 6,244만 3천원 규모임.
 -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38만원이 증액된 2억 5,8723만 5천원임.
 - 기금수입은 5,490만 1천원이 증액된 36억 5,727만 3천원 규모임.
 - 일반부담금은 25억 7,000만원이 감액된 41억 3,500만원 규모임.
 - 기타 잡수입은 7,200만원이 감액된 85억 4,921만 6천원 규모임.
-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0.8%인 20억 3,030만 5천원이 증액된 2,447억 7,426만 5천원으로
- 특별교부세 39억 3,000만원

- 증액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9,969만 5천원이 감액된 961억 8,726만 5천원임.
-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187만 8천원이 증액된 901억 1,137만 2천원임.
-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.4%인 195억 3,015만 6천원이 증액된 3,255억 1,508만 7천원으로 이는

· 행정자치부	78억 8,611만 9천원
· 문화관광부	△7억 3,784만원
· 농림부	△5억 3,250만 1천원
· 산업자원부	△38만원
· 보건복지부	1억 3,288만원
· 환경부	24억 1,425만원
· 노동부	4억 2,042만 2천원
· 건설교통부	126억 9,200만원
· 해양수산부	△1,000만원
· 농촌진흥청	41만 5천원
· 산림청	△380만 4천원
· 수해복구사업	△27억 2,443만 3천원
· 병무청	△697만 2천원

- 지방채는 기정예산대비 49.7%인 117억 2,020만원이 증액된 352억 7,900만원으로 이는

· 국내차입금	△12억 3,980만원
·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	129억 6,000만원이
계상됨.	

〈 특별 회 계 〉

- 특별회계의 세입예산(안) 규모는 2,448억 6,536만 5천원으로서,
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2,000억 4,984만 9천원,
기타 5개 특별회계가 448억 1,551만 6천원임.

- 공기업특별회계중,

- 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5억 5,147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바,
 - 용지매출수익 △255억 5,147만 4천원
 - 임대사업수입 278만 4천원
 - 기타영업외수익 △278만 4천원이며,

-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60억 4,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,

- 예금이자 수입 30억원
- 융자금회수수입 180억 4,000만원
- 차입금 50억원이며,

- 기타 특별회계중

-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78만 3천원으로

- 도비부담금 2,828만 7천원
- 국고보조금 1억 1,314만 6천원
- 시군결산반환금 384만 8천원이며,

□세출예산

'9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,903억 434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,454억 3,898만원, 특별회계가 2,448억 6,536만 5천원임.

< 일반회계 >

- 인건비로는 기정예산보다 14억 1,354만 7천원이 증액된 522억 2,449만 4천원으로 이는 12월 봉급을 계상한 정산분임.
- 물건비로는 기정예산보다 2억 2,037만 1천원이 증액된 418억 5,606만 4천원임.
- 이전경비로는 기정예산보다 106억 1,908만 1천원이 증액된 2,044만 2,277만 1천원임.
-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52억 2,285만 4천원이 증액된 5,905억 9,299만 7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고보조우회도로 개설비등이 증액된데 기인함.
- 용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과 동일함.
- 보전재원은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 147억 4,000만원이 증액됨.
-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억 642만 3천원이 증액된 247억 7,706만 1천원으로 이는 회계상호간 전출금이 증액된데 기인함.
-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2억 6,687만 4천원이 증액된 71억 1,485만 4천원임.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드리면,

-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- 일반행정비 | 12억 4,421만 3천원 |
| - 사회개발비 | 23억 5,290만 4천원 |
| - 경제개발비 | 236억 7,293만 5천원 |

- 민방위비 4억 1,222만 4천원
- 지원 및 기타경비 147억 4,000만원이며

○ 주요경비별료

첫째, 중앙정부지원사업으로 290억원으로

- 국고보조사업 163억원
- 지방양여금사업 106억원
- 특별교부세사업 20억원
- 중앙기금사업 1억원이며,

둘째,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및 비도지정사업비로

- 명예퇴직수당 14억원
- 수해복구사업차환금 129억원
- 공유재산매입금 4억원
- 중소기업육성기금차입금 상환금 18억원이며,

셋째, 금회추경에 반영한 시책사업비 7억원으로

-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7,000만원
- 음성실내체육관 건립비 3억원과

넷째, 광역상수도정수장 분담금 12억원,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분담금 29억원등 4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.

〈 특별 회 계 〉

○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,

-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

· 자본적지출

△255억 5,147만 4천원이고

-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

· 자본적지출

260억 4,000만원이며

-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

·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의료보호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,000만원을
계상함.

3. 검토의견

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(안)은 1조 1,903억 43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조 1,469억 8,139만 2천원보다 3.8%가 증액된 규모로서,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.7%인 426억 8,915만원이 증가한 9,454억 3,898만 4천원이며,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.3%인 6억 3,380만 7천원이 증액된 2,448억 6,536만 5천원의 규모로서, 금회 추가경정예산(안)은 중앙 각 부처로부터 교부결정 내시된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지원으로 도정시책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 조정과 년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결산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금번 예산(안)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몇가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첫째,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예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.

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「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이를 사용할 수 있다」 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, 앞으로는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사업설명 및 협의를 거친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둘째, 지방체에 관한 사항입니다.

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「수지균등의 원칙」에 따라 「건전하게 운영」 하여야 한다.(지방자치법 제113조) 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법

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수해복구비 차환차입금으로 129억 6,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셋째,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증액 계상입니다.

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긴급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